무인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관리업무 운영세칙

목 차

| 제1장 총칙 |
|---------------------|
| 제1조 목적] |
| 제2조 정의] |
| 제3조 적용범위] |
| 제2장 심사관 임명 등1 |
| 제4조 심사관의 요건] |
| 제5조 심사관 교육 |
| 제6조 신분증의 발급 등 2 |
| 제3장 전문교육기관 지정심사 등 |
| 제7조 서류의 접수 등 |
| 제8조 일정의 안내 |
| 제9조 지정심사 등 |
| 제10조 심사결과의 보고 |
| 제11조 지정서의 교부 등 |
| 제12조 전문교육기관 지정 변경심사 |
| 제13조 재심사 |
| 제14조 전문교육기관 지정 철회 |
| 제4장 전문교육기관의 점검 등 |
| 제15조 점검계획의 수립 |
| 제16조 점검의 구분 등 |
| 제17조 점검반의 편성 |
| 제18조 점검의 실시 등 |
| 제19조 점검결과의 보고(|

| 부 | 최 | | ጸ |
|---|------|-----------------|---|
| | 제25조 | 소집 및 회의 | 8 |
| | 제24조 |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 | 7 |
| | 제23조 | 위원자격 | 7 |
| | 제22조 |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| 6 |
| 제 | 5장 심 | 의위원회 | 6 |
| | 제21조 | 점검결과 기록유지 | 6 |
| | 제20조 | 법령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등 | 6 |

무인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관리업무 운영세칙

2022.11.22. 제정(규정 제1391호)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「항공안전법」 제126조제1항, 제126조제5항, 제135조제5항제12호,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7조제2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「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」제7조제2항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관리업 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전문교육기관"이란 「항공안전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26조제1항에 따라 초경량 비행장치(무인비행장치에 한정한다)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.
- 2. "지정심사"란 「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」(이하 "고시" 라 한다) 제8조에 따른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말한다.
- 3. "심사관"이란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점검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(이하 "이사장"이라 한다)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.
- 4. "관리부서"란 법 제12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조건의 충족 및 유지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.
- 제3조(적용범위) 이 세칙은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의 소속 직원에게 적용한다.

제2장 심사관 임명 등

- 제4조(심사관의 요건) ① 이사장은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점검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5조에서 정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을 심사 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.
 - 1. 법 제125조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득한 사람
 - 2. 무인비행장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
 - 3. 전문교육기관, 항공훈련기관 관련 업무경력 또는 무인비행장치 자격관리업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
 - 4. 교통안전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소지한 사람
 - 5. 항공관련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항공분야 경력을 소지한 사람

- 6. 이사장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업무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
-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임명된 심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.
- 1.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명을 받은 경우
- 2. 과실로 인하여 인명피해를 입히는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
- 3.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
- 4. 전문교육기관 심사를 위한 지원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
- 5.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교육기관 심사 또는 점검을 진행한 경우
- 제5조(심사관 교육) ① 이사장은 심사관의 임명 및 자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교육훈 련을 시행하여야 한다.
 - 1. 초기교육훈련(Initial training): 심사관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지식 함양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훈련
 - 2. 직무교육훈련(On-the-job training): 제1호의 초기교육훈련 이수자를 대상으로 심사 및 점검업무 실무처리에 필요한 노하우(know-how) 등을 전수하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으로서 교관의 업무시범 및 관찰 또는 교관 감독하에 실제 업무수행을 통하여 진행되는 교육 훈련
 - 3. 정기교육훈련(Recurrent training): 심사관 임명 후 심사관의 기량유지, 전문성 강화 및 안전저해 사례 공유 등을 위해 심사관으로 임명된 해의 말일부터 2년 이내 실시하는 교육
 - 4. 재자격부여교육훈련(Requalification training): 정기교육훈련 미이수 등으로 심사관의 자격이 상실된 사람에게 심사관 재임명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훈련
 - ② 제1항의 각 교육훈련별 세부 교육내용과 교육시간은 별표 1의 심사관 교육훈련 기준과 같다.
- 제6조(신분증의 발급 등) ① 이사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심사관으로 임명된 사람에 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 - ② 이사장은 심사관의 신분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.
 - 1.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
 - 2. 신분증이 훼손된 경우
 - 3. 성명, 소속 등 중요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
 - ③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할 때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증 발급 대장에 발급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.
 - ④ 신분증 소지자가 제4조제2항에 따라 심사관 임명이 취소된 경우, 신분증은 그 효력을 잃는다.

- ⑤ 심사관은 본인의 신분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분증을 관리부서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며, 관리부서의 장은 반납된 신분증을 소각하거나 분쇄하여야 한다.
- 1. 심사관 임명이 취소된 경우
- 2. 신분증이 훼손된 경우
- 3. 성명, 소속 등 중요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

제3장 전문교육기관 지정심사 등

- 제7조(서류의 접수 등) ① 이사장은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(이하 "신청자"라한다)가 「항공안전법 시행규칙」제307조제1항(이하 "시행규칙"이라 한다)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적절히 작성하고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하고 적합한경우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.
 - ② 이사장은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 및 구비서류(이하 "신청서 등"이라 한다)가 부적절하게 작성되었거나 누락된 경우, 신청자에게 이를 알리고 보완하도록 한다.
- 제8조(일정의 안내) ① 이사장은 신청서 등을 접수한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접수여부, 서류 심사 및 현장심사 계획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필요시 심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 음을 알려주어야 한다.
 - ② 이사장은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위한 일정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9조(지정심사 등) ① 심사관은 시행규칙 제307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정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 - 1. 서류심사: 제7조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 등의 내용이 시행규칙 제307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
 - 2. 현장심사: 신청서 등에 포함된 사항의 진위여부 확인 및 실제 이행을 위한 장소·인력 ·장비·시설 등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한 심사
 - ② 심사관은 현장심사 시 심사관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제6조에 따른 신분증을 지니고, 이를 신청자 또는 관계직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.
 - ③ 심사관은 현장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신청자 또는 관계직원에게 심사의 목적, 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.
 - ④ 심사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현장심사 시 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교육기관설치자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.
 - ⑤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심사 시 제7조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 등의 내용이 항공관 런법령, 안전관리기준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하여야 한다.

- ⑥ 심사관은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에서 제척된다.
- ⑦ 심사관은 제6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.
- ⑧ 신청자는 심사관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4호서 식의 기피신청서에 따라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
- 제10조(심사결과의 보고) 제9조에 따른 심사를 실시한 심사관은 고시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11조(지정서의 교부 등) ① 이사장은 제9조에 따른 심사결과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지정서 및 훈련운영기준을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교육훈련 품질향상, 사고예방 등을 위해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제한사항을 포함하여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.
 - 1. 전문교육기관 교육 대상자
 - 2. 전문교육기관 교육 정원
 - 3. 전문교육기관 교육 기간
 - 4. 기타 전문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
 - ② 전문교육기관 훈련운영기준의 변경심사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하되, 변경된 사항만 신청자에게 교부한다.
 - ③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12조(전문교육기관 지정 변경심사) ① 이사장은 전문교육기관의 장이 고시 제10조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 요청 시 제9조를 준용하여 변경승인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현장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9조제1항제2호는 생략할 수 있다.
 -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심사를 현장심사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사전에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13조(재심사) ① 이사장은 지정 전문교육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고시 제11조를 준용하여 채심사하여야한다.
 -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14조(전문교육기관 지정 철회) ① 전문교육기관의 장이 운영상의 사유 등으로 자발적으로 지정 철회를 요청한 경우 이사장은 그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. 이 경우, 지정 철회를 요청하는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철회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관련 공문을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철회 결과를 전문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, 그 사실을

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4장 전문교육기관의 점검 등

- 제15조(점검계획의 수립) ① 이사장은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다음 연도의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계획을 수립할 때 점검활동의 중복・편중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점검의 시기・대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 - ③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연간 점검계획을 해당 전문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16조(점검의 구분 등) 제15조에 따른 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 - 1. 정기점검: 연간 점검계획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현장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점검·심사
 - 2. 수시점검: 무인비행장치 사고 또는 전문교육기관의 각종 민원 발생 등으로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서류 또는 현장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점검·심사
- 제17조(점검반의 편성) ① 이사장은 제16조에 따른 점검업무 수행 시 2인 이상의 심사관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여야 한다. 다만, 업무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점검반 편성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.
 - ② 이사장은 제2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점검반에 민간의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.
- 제18조(점검의 실시 등) ① 이사장은 제16조에 따른 점검업무 수행 시 점검일시, 사유 및 내용 등 세부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일 7일 전까지 전문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. 다만, 수시점검 등 점검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계획을 사전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실시할 수 있다.
 - ② 심사관은 점검업무 시작 전 전문교육기관의 장 및 관계직원에게 심사관임을 알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점검목적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.
 - ③ 심사관은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전문교육기관 점검표에 의거하여 점검업무를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시점검 등 필요한 경우 점검목적에 따라 해당하는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.
 - ④ 심사관은 점검업무 중 관계법령 및 고시에서 정한 지정기준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확인서를 작성·징구하고 필요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.

- 제19조(점검결과의 보고) ① 심사관은 제16조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전문교육기관 점검표를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분야별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사항 및 미비점에 대한 개선방 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.
 - ③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보고 후 필요시 전문교육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충분한 조치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시정지시/개선권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.
 - 1. 시정지시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- 가. 전문교육기관이 지정 또는 변경승인 받은 것과 동일하게 운영되지 않은 경우
 - 나. 각종 기준 및 절차 등에 위배되는 경우
 - 2. 개선권고: 안전을 위해 개선방법을 제시하고자 할 경우
 - 3. 현장시정: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저해요소로 단기간 내에 시정이 가능한 경우
 - ④ 심사관은 제3항에 따른 시정지시/개선권고에 대하여 전문교육기관의 장이나 관계직원이 조치기한 이내에 조치한 결과를 확인하고, 조치결과가 부적합할 경우에는 다시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.
 - ⑤ 시정지시, 개선권고 또는 현장시정토록 한 사항에 대해 전문교육기관의 장이나 관계직원이 조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심사관은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시정지시/개선권고서 조치사항 확인란에 처리결과를 기록한 후 종결 처리하여야 한다.
- 제20조(법령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등) 이사장은 제16조에 따른 점검 결과 해당 전문교육 기관이 항공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 거나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알려야 한다.
- 제21조(점검결과 기록유지) 심사관은 별지 제6호서식의 확인서, 별지 제7호서식의 시정지 시/개선권고서 발부 및 수검자의 조치결과 확인 등에 대하여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 - ② 이사장은 전문교육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시정조치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126조제4항 및 고시 제11조에 해당하는 전문교육기관 지정 취소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5장 심의위원회

- 제22조(심의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이사장은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관리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운영할 수 있다.
 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· 의결한다.

- 1. 정부기관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에 따른 지정여부
- 2. 기타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관리업무에 중요한 사항
- ③ 위원회의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.
- ④ 위원장은 위원회가 소속된 관리부서의 실장이 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 다만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다.
- ⑤ 위원은 매회 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장이 선임한다.
-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.
-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.
- 1. 해당 기관 지정심사 및 점검업무의 수행과정에 직·간접적으로 관여한 자
- 2. 위원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

제23조(위원자격) ①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자로 한다.

- 1.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해당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자
- 2. 해당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
- 3.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담당 부서장급 이상의 경력소유자
- 4. 공인된 연구소에서 해당분야의 책임연구원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
- 5. 그 밖에 관련분야 경력 등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자
- ② 내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- 1. 관련 직무 경력이 있는 4급 이상 직원
- 2. 그 밖에 관련분야 경력 등이 제1호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람
- ③ 위원으로 선정된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심의위원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24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.
 - 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그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
 - 2. 위원이 그 안건의 당사자와 「민법」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 - 3.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용역, 자문,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
 - 4. 심의안건의 시행으로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
 - 5.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안건 대상 업체 등에 재직한 경우
 - 6.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심의안건과 관련된 감독부서에 소속된 경우
 - ② 심의사항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

-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.
- ④ 안건의 심의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간사 또는 직원에게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25조(소집 및 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- ③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토의를 필요로 하지 않거나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위원회소집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- ④ 위원장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 중 관계자의 의견청취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.
- ⑤ 제4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등 회의에 관한 사항을 문서 또는 전자적 방법(홈페이지 게시, 문자메시지 전송, 이메일 통지)에 따라 알려야 한다.

부 칙 <규정 제1391호, 2022.11.22>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일(2022.11.22.)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세칙 시행 전에 국토교통부 고시「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」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관리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심사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이 세칙 시행 후 1년 이내 정기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.

■ 무인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관리업무 운영세칙 [별표 1]

심사관 교육훈련 기준

1. 초기교육훈련

| 과 목 | 교육 내용 | 교육시간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|
| 가. 항공법규 등의 이해 | - 무인비행장치 안전관리제도(항공법령) | 2h |
| 나. 점검업무의 이해 | - 점검업무처리 절차(감사기법 및 청렴교육 포함) | 1h |
| 다. 무인비행장치 자격증명 교육과정의 이해 |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무인비행장치 종류(무인비행기, 무인헬리콥터, 무인멀티콥터, 무인비행선)별 교육훈련 과정 | 2h |
| 라. 전문교육기관 지정 기준 | -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- 무인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관리업무 운영세칙 - 훈련운영기준(Training Specification) - 교육규정(Training & Procedure Manual) - 전문교육기관 지정·변경 서류심사 요령 - 전문교육기관 지정·변경 현장심사 요령(정기·수시점검 포함) - 항공안전법규 위반 사실조사 요령 - 보고서 작성 및 보고 | 8h |
| 마. 사고예방 | - 무인비행장치사고 사례 | 1h |
| 5개 | _ | 14h |

2. 직무교육훈련

| 훈 련 내 용 | 훈련량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전문교육기관 현장심사 | 1회 이상 |

3. 정기교육훈련 및 재자격부여 교육훈련

| 과 목 | 교육 내용 | 교육시간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|
| 가. 전문교육기관 관련 정책방향 및 제도 변경사항 | - 안전관리 정책 - 산업 활성화 정책 - 관련법령 및 행정규칙 내용 | 2h |
| 나.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및 특성 |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무인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관리업무 운영세칙 훈련운영기준(Training Specification) 교육규정(Training & Procedure Manual) | 2h |
| 2개 | - | 4h |

■ 무인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관리업무 운영세칙 [별지 제1호서식]

신분증 양식

(전면) (후면)

한국교통안전공단 (1) 8.6cm 2 3 5.4cm

| 무 | 인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심사관증 |
| 발급 | 번호 |
| 생년 | 월일 |
| 위 / | 사람은 「무인비행장치 전문 |
| 교육 | 기관 지정 및 관리업무 운영 |
| 세칙_ | 제4조에 따른 심사관임을 |
| 증명 | 합니다. |
| | |
| | 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④ |
| 본 | 증을 습득하신 분은 <u>가까운 우체통</u> |
| <u>에</u> 넣 | 어 주시기 바랍니다. |
| | (5) |
| | |

- (주) 1. 위의 ① ② ③ ④ ⑤ 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.

 ① 공단 영문표기
 ④ 이사장 직인

 ② 사 진(3.1Cm×3.9Cm)
 ⑤ 공단 주소

 ③ 성 명

- 2.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.

| 글자의 구분 | 글자의 크기 | 글자의 종류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|--|--|
| 한국교통안전공단 | 공단 A.I.S에 의함 | | | |
| 공단 영문표기 | | | | |
| 성 명 | 20 pt | HY태고딕 | | |
| 신 분 증 | 14 pt | 굴림체 | | |
| 발급번호, 생년월일 | 8 pt | HY중고딕 | | |
| 위 사람은 ~ 심사관임을 증명합니다. | 10 pt | 굴림체 | | |
| 승인 명의 및 직인 | 전자이미지 | 형태 입력 | | |
| 본 증을 ~ 바랍니다. | 6 pt | 굴림체 | | |
| 공단 주소 | 5 pt | 굴림체 | | |

3. 신분증은 P.V.C재질의 카드형으로 제작한다.

■ 무인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관리업무 운영세칙 [별지 제2호서식]

신분증 발급대장

| 발급 | 발 급 연월일 | 소 속 | 직 급 | 성 명 | 생년 월일 | 신 규, 재발급 | 회수 여부 | 재발급 사 유 | 비고 |
|----|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|----|
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

■ 무인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관리업무 운영세칙 [별지 제3호서식]

전문교육기관 설치자 서약서

본인은 전문교육기관 설치자로서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.

- 1. 본인은 전문교육기관 설치자 자격요건으로 항공 관련 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거나, 항공 관련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였음
- 2. 전문교육기관 학과 및 실기교육장을 사용함에 있어 관련법규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음
- 3. 본인은 본 서약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전문교육기관 지정 취소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

년 월 일

기 관 명 :

성 명: (인)

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

■ 무인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관리업무 운영세칙 [별지 제4호서식]

기피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(대리인)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| 접수번호 | | 접수일시 | |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|--|
| | 성명(법인·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|) | 생년월일(성별) () | |
| 시컨이 | 여권·외국인등록번호(외국인의 : | 경우 작성) | 사업자(법인·단체)등록번호 | |
| 신청인 | 주소(소재지) | | 전화번호(또는 휴대전화번호) | |
| | 전자우편주소 | | 팩스번호 | |
| 기피신청 대상 | | | | |
| 기피신청 이유 | | | | |
| | ※ 필요시 소명자료 별도 첨부 | | | |

한국교통안전공단 「무인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관리업무 운영세칙」 제9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피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귀하



210mm×297mm[백상지(80g/m²)]

■ 무인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관리업무 운영세칙 [별지 제5호서식]

| | | 전문교육기 | 기관 점검표 | E ([|]정기 | [|]수시) |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|
| 교육: | 기관명 | | | 7 | 점검일자 | | | |
| 교육: | 과정명 | | | | 장 소 | | | |
| 심. | 사관 | | 2 | 적검결과 | | [] 적합 | []부적합 | |
| | | 점긷 | 범항목 | | | | 적합 | 결과 부적합 |
| 1. 설치 |] zl- | | | | | | | <u> </u> |
| 1-1 | <u>연령</u> | | | | | | | |
| 1-2 | 결격자가 | 아닐 것 | | | | | | |
| 1-3 | 교육기관 | | | | | | | |
| 2. 학교 | 나 및 실기 | 교육 조직 | | | | | | |
| 2-1 | 학과 및 | 실기교관 | | | | | | |
| 2-1-1 | 연령 | | | | | | | |
| 2-1-2 | 조종자 증 | 명 취득 여부 | | | | | | |
| 2-1-3 | | 교관 또는 실기 | | 수 여부 | | | | |
| 2-1-4 | | 또는 평가 능 | 력 | | | | | |
| 3. 교육 | | | | | | | | |
| | | 서, 참고서 등 | | | | | | |
| | | (교육정원 수외 | ト 동일) | | | | | |
| | 수훈련장비 | 4 11 .1 11 | | ۲ - ا | | | | |
| 4-1 | | 1대 이상) 또는 | | 수냥 | | | | |
| 4-2 | | 보험 유효 여부 | | | | | | |
| 4-3 4-4 | | 제원표 (최대이륙 비행기록부 | · 중당 등) | | | | | |
| | <u> </u> | | | | | | | |
| 5. 9^{\pm} | <u>가 교육시설</u> 강의실 수 | | | | | | | |
| 5-2 | | <u> </u> | 선 비 | | | | | |
| 5-3 | | 등 편의시설 | 근 '') | | | | | |
| |] 교육시설 | | | | | | | |
| 6-1 | | 장 규격 충족 o | 여부 | | | | | |
| 6-2 | | -권한 이상 유두 | | | | | | |
| 6-3 | | 문제 이상 유두 | | | | | | |
| 6-4 | 장애물 또 | 는 불법 건축물 | 물 유무 | | | | | |
| 6-5 | | 적합 여부 | | | | | | |
| 6-6 | 위생시설 | 등 기타시설 | | | | | | |
| 6-7 | 풍향, 풍속 | 속 감지시설 | | | | | | |
| 6-8 | | 의료물품 구비 | | | | | | |
| 6-9 | | 기관 비상연락 | | | | | | |
| 6-10 | | 시스템 설치 여 | 부 | | | | | |
| | 수훈련규정의 | | . 1 1 1 | | | | | |
| 7-1 | | 규정의 적정성 | | 1 =1 ^ 1 | | | | |
| | | 치 사용사업 등 | , | 년 경우) | | | | |
| 8-1 | | 행장치 사용사임 | 급 등녹 여부 | | | | | |
| (종합의 | 선) | | | | | | | |

210mmx297mm[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]

■ 무인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관리업무 운영세칙 [별지 제6호서식]

확 인 서 부서명 직급 성명 점검자 부서명 직급 성명 점검일시 점검대상(기관)명 점검개요 점검장소 점검항목 처분종류 [] 법규위반 [] 시정지시 [] 개선권고 위반내용 관련근거 조치기한 확인자 직책 또는 직급 확인자 (서명) 확인서명 거부시 그 사유

210mm×297mm[백상지(80g/m²) 또는 중질지(80g/m²)]

■ 무인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관리업무 운영세칙 [별지 제7호서식]

(앞 면)

| 시정지시/개선권고서 | ①시정지시 [] 개선권고 [] 현장시정 []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②점검일자 : | ③발행일자: |
| ④대상전문교육기관 : | 교육과정 : |
| 9 10 22 7 72 | 점검장소 : |
| ⑤조치기한 : | ⑥근거: |
| ⑦지적사항: | |
| | |
| 수검자 성명 : | (서명) |
| ⑧시정지시/개선권고사항 : 심사관 성명 : | (서명) |
| ⑨조치내용 | |
| 전문교육기관의 장 성명 : (서 | 명) <u>날짜:</u> |
| ⑪조치사항 확인 [] 만족 [] 재시 |]정요구 |
| 년(Yea | ar) 월(Month) 일(Date) |
| 심사관 : | 서명 |

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m²)

(뒷 면)

[기재요령]

- ① 점검결과에 따라 해당되는 항목에 V표시를 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 - 시정지시 : 각종 기준 및 절차 등에 위배되는 경우
 - 개선권고 : 안전을 위해 개선방법을 제시하고자 할 경우
 - 현장시정 :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저해요소로 단기간내에 시정이 가능한 경우
- ② 점검일자는 점검수행 기간을 기재한다.
- ③ 발행일자는 시정지시/개선권고서를 발행한 해당일자를 기재한다.
- ④ 대상전문교육기관은 점검대상 사업자의 국문명칭을 기재한다.
 - 교육과정은 무인비행기, 무인헬리콥터, 무인멀티콥터, 무인비행선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.
 - 무인비행장치는 필요시 신고번호를 기재한다.
 - 점검장소는 점검이 수행되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.(예:00기관 실기교육장)
- ⑤ 조치기한은 시정조치를 완료하거나 조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충분한 기한을 고려하여 심사관이 명시한다.
- ⑥ 해당 점검의 근거가 되는 기준(항공법령, 교육훈련운영기준, 교육훈련규정 등)의 조항을 명시한다.
- (7) 점검 시 발견 및 확인된 지적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.
- ⑧ 발견된 지적사항을 효과적으로 시정/개선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재한다.
- ⑨ ⑧항에 따라 시정/개선 요구한 사항의 조치내용을 전문교육기관의 장이 기재한다.
- ① ②항의 조치결과에 대하여 만족 또는 재시정요구로 구분하여 해당항목에 V표기하고 재시정요구시 사유를 상세히 기록한다.

■ 무인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관리업무 운영세칙 [별지 제8호서식]

(앞 면)

심의위원 청렴서약서

소 속:

직 위:

성 명:

- 위 본인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심의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다음사항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약하며.
 - 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그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
 - 2. 위원이 그 안건의 당사자와 「민법」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 - 3.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용역, 자문,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
 - 4. 심의 안건의 시행으로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
 - 5.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안건 대상 업체 등에 재직한 경우
 - 6.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심의안건과 관련된 감독부서에 소속된 경우
-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관계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·의결에 임하도록 하겠으며, 동 과정에서 지득한 내용은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 합니다.

20 년 월 일

위 서약자 (인)

한국교통안전공단 이 사 장 귀 하

(뒷 면)
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(위원용)

한국교통안전공단은 심의위원회 명단관리 및 수당 지급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고자 합니다.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[필수] 기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내역

| 수집 • 이용 항목 | 수집ㆍ이용 목적 | 보유기간 |
|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| 심의위원회 명단 관리 및 강사료/수당/여비 지급, 금액오류, 세금정정, 지급 결과 확인 | 5년 ^[2] |

위와 같이 기본 개인정보를 수집 ·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

[]동의 []미동의

- ※ [1] 성명은 예금주와 동일인으로 정보주체 본인이여야 합니다.
- ※ [2]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에 의거하여 세무 신고 및 과세에 활용을 위해 5년간 보관합니다.
- ※ 위의 [필수]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수당 등 지급이 제한됩니다.
- □ [필수] 고유식별정보 수집·이용 내역

| 수집・이용 항목 | 수집ㆍ이용 목적 | 보유기간 |
|----------|---|------|
| | 심의위원회 명단 관리 및 강사료/수당/여비 지급, 금액오류, 세금정정, 지급 결과 확인 | 5년 |

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 ·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

| 동의 | ㅁ | 동의 |
|----|---|----|
| | | |

- ※ 위의 [필수] 고유식별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수당 등 지급이 제한됩니다.
- □ 고유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)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안내
 -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소득세법 제145조 2항에 근거,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영 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고유식별번호(주민등록번호)를 처리하고 있습니다.

| | 년 | 월 | 일 |
|-----|---|--------|----|
| 성명: | | (서명 또는 | 인) |

계좌정보(본인명의 계좌은행명): (은행)

주민등록번호:

주 소:

소속 및 직급: